

한국의 건설 제기준 현황 및 정비방안

김 공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부원장

1. 서론

전 세계적으로 불고 있는 시장개방 흐름에 따라 국내 건설업계에서는 건설산업의 체질 변화를 요구받고 있으며, 건설공사의 부실에 따른 책임소재 및 부실의 사전예방을 위해서 건설공사 수행에 필요한 계약서류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이와 같은 환경의 변화 속에서 건설공사기준은 그 특성상 새로운 공법, 장비, 자재 등 건설기술의 발전속도에 대응하여 지속적인 제·개정 및 보완이 이루어져야 하나, 기존의 건설공사기준 운영 및 관리체계로는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기존의 각종 건설공사기준은 구성체계가 일치하지 않고, 그 내용이 중복되어 기술되거나 동일한 기준에 대하여 개별 기준간 상충되는 점이 나타나고 있어, 건설공사의 적용상에 어려움이 있으며, 각 학·협회별로 제시되고 있는 각종 자재 및 시방 관련 기준간 상충문제는 분쟁의 요소로 제기되고 있다. 또한, 건설공사기준에 대한 현장기술자들의 인식 측면에서 보면, 지금까지는 기준의 존재여부에 관심을 쏟아 왔으며, 그 기준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며, 어떠한 발전전략을 가지고 수행되는가에는 무관심한 것이 사실이었다.

이에 따라 건설교통부에서는 건설공사기준의 수준향상과 제·개정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건설공사기준의 관리업무를 민간전문단체에 이관하였으며, 건설공사기준의 체계를 재정비하기 시작하였다. 즉, 기존의 건설공사기준을 국가기준과 하위기술기준으로 이원화하여 국가기준은 중앙건설기술심의를 의무화하고 하위기술기준은 관리주체에서 자율적으로 정비하도록 하고 이를 시행하고 있다.

본 고에서는 이러한 건설공사기준 정비현황을 살펴보고, 정부가 수립한 중·단기적인 건설공사기준 정비방안에 대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2. 한국의 건설 제기준 현황

2.1 새로운 건설공사기준 정비체계

건설교통부는 현행 건설공사기준을 새롭게 개선해 나가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목표를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2.1.1 새로운 건설공사기준 체계의 구축

기존에 건설공사기준 집필진들의 다양한 요구에 따라 혼재되어 사용되던 건설공사기준 체계 관련 용어를 재정비하여 다음 그림 1과 같이 사용상의 목적에 맞게 체계화하였다. 새로운 건설공사기준 체계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건설공사기준 운영 체계 구축방안 연구'를 통하여 제시된 것으로 개정된 건설기술관리법에 반영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새로운 건설공사기준 체계는 시공기준과 설계기준으로 명확히 분리하고 다양한 기준간 위계를 설정하였다. 즉, 시방서를 활용목적 및 위계에 따라 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공사시방서로 구분하였으며, 설계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그 이외의 다양한 기준을 총칭하여 하위기술기준으로 분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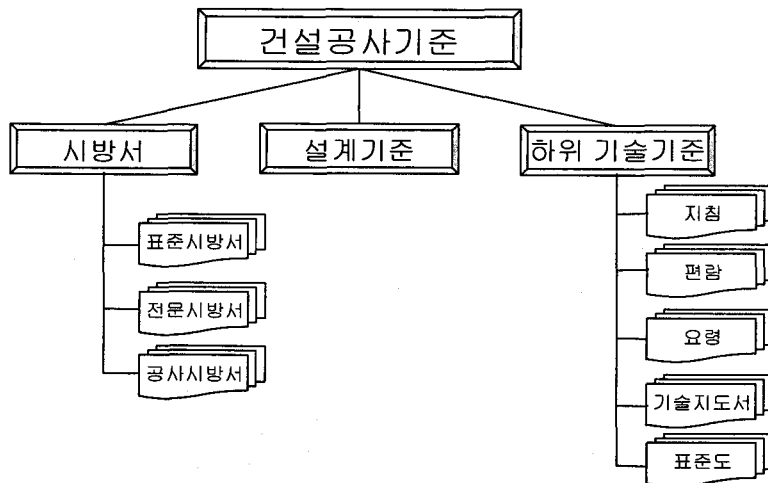


그림 1 새로운 건설공사기준 체계 및 용어의 재정립

2.1.2 건설 제기준 재정비를 통한 클레임 방지

새로운 건설공사기준 체계가 제시됨에 따라 관리주체인 관련 학·협회에서는 새로운 체계 구축의 주 목적인 계약서류로서의 기능 강화를 통한 클레임 방지노력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해당 건설공사기준을 새롭게 제·개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이를 위하여 건설교통부는 97년 4월 건설공사기준 정비와 관련한 국고보조금을 관련 학·협회에 지원하였으며, 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공사시방서 작성요령을 마련하여 학·협회간의 형식상의 차이 및 내용의 통일된 정비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이러한 작업이외에도 정부는 건설공사기준에 대한 중복을 최소화하고 기준 관리의 효율성 및 기준사용자의 사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유사한 용도의 건설공사기준에 관한 통합을 유도하였다. 예를 들어 건축 및 토목분야에서 분리되어 제시되던 콘크리트 관련 설계기준을 통합하였으며, 분산된 건축분야의 설계기준들은 통합하도록 하였다. 또한, 새로운 건설공사기준 체계의 정착을 위하여 공사시방서 작성요령 마련을 위한 발주기관 회의를 개최하여 공사시방서 작성상의 문제점을 최소화하도록 하였으며, 공사시방서 적용을 위한 발주청 및 엔지니어링 업체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다. 또한, 표준시방서(토목, 건축, 콘크리트 분야)에 대하여 영문화 작업을 수행하였고, 표준시방서 작성요령에 의하여 표준시방서를 정비하고 있다.

2.1.3 건설 제기준 관리체계의 선진화

정부는 기존의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에 대한 지속적인 정비를 추진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구체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상설위원회의 형태인 건설기준정비협의회를 정례화하여 학·협회 상호간의 의사교환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이를 위하여 건설공사기준에 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현장 기술자들의 건설공사기준 사용실태를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를 지속적으로 실천해나갈 수 있는 건설공사기준 관리 전담조직 마련 등의 방안을 수립해놓고 있다.

2.2. 건설 제기준 정비 현황

2.2.1 시방서

1997년까지 일반적인 건설공사기준은 설계 및 시공에 관련한 다양한 기준들이 혼재되어 수록되어 사용되고 있었다. 기존의 시방서의 경우를 살펴보면, 표준시방서 중 일부에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도로교 표준시방서와 같이 시방서 내에 설계기준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하천공사 표준시방서와 같이 계약문서적인 특성이 고려되지

아니하고, 계획 단계부터 유지관리 단계까지 기술지도서의 형태로 작성된 것도 있었다. 따라서, 1998년에는 이처럼 표준시방서 내에 설계기준이 포함되어 있거나 기술지도서식으로 작성되어 있는 표준시방서들을 개정하였는데, 이 개정을 통하여 표준시방서 내에서 설계기준을 분리시켰고, 기술지도서의 형태를 계약문서의 성격을 가진 시방서의 형태로 바꾸었다. 현재 국내 표준시방서의 개정 현황은 표 1과 같다.

표 1 현행 표준시방서 현황

1999. 8 기준

표준시방서(제정,최종개정년도)	관리주체
1. 토목공사 일반표준시방서('96) 2. 도시철도(지하철편)공사 표준시방서('97)	1. 대한토목학회
3. 콘크리트 표준시방서('99)	2. 한국콘크리트학회
4. 도로공사 표준시방서('96) 5. 도로교 표준시방서('99 개정중)	3. 한국도로교통협회
6. 하천공사 표준시방서('99)	4. 한국수자원학회
7. 건축공사 표준시방서('99)	5. 대한건축학회
8. 터널공사 표준시방서('99)	6. 대한터널협회
9. 조경공사 표준시방서('96)	7. 한국조경학회
10. 건축기계설비 표준시방서('96)	8. 공기조화냉동공학회
11. 건축전기설비공사 표준시방서('98)	9. 한국조명전기설비학회
12. 항만공사 표준시방서('96)	10. 한국항만협회
13.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97)	11. 환경부
14. 농업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99 개정 중)	12. 농림부

※ 기타 철도청 관할 표준시방서들이 있는데, 그 중 '철도 토목공사 표준시방서'가 개정중에 있음

또한, 발주기관 자체 시방서인 전문시방서의 현황을 살펴보면, 국내에는 전문시방서를 보유한 발주기관이 건설교통부 산하 4개 공사(公社)에서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국내 발주기관별 전문시방서는 각 기관의 발주공사에 필요한 공종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필요에 따라 하나 또는 다수의 전문시방서로 나누어 작성하였다. 한국도로공사 전문시방서의 경우, 토목편을 이미 작성하였고, 추후에 건축공사, 전기(터널 조명 등)공사, 기계설비(터널 환기 등)공사, 광통신공사, 조경공사 등을 부대시설편으로 묶어서 만들 예정이다.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경우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설비공사(기계, 전기, 정보통신)가 모두 포함된 하나의 전문시방서를 작성하여 활용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는 "98년도 작성된 전문시방서 작성지침"에 따라 서울시 전문시방서를 토목공사 전문시방서, 건축공사 전문시방서로 작성하고 있으며, 인천 신공항건설공사의 공항전문시방서, 해양수산부의 항만전문시방서가 제정중에 있

다.(표 2 참조)

표 3 국내 주요 발주기관별 전문시방서 현황

기관	건설교통부 (서울지방 국토관리청)	한국도로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명칭	공사시방서 (‘98)	고속도로공사 전문시방서 (토목편, ‘98)	주택건설공사 전문시방서 (‘98)	건설공사 전문시방서 (‘97)	상수도 공사시방서 표준(안)(‘97)	댐 공사시방서 표준(안)(‘97)
대분류	1. 총칙	제1장 총칙	1. 총칙	0. 계획 및 일반사항	G. 일반시방	G. 일반시방
	2. 지반조사 및 측량	제2장 측량 및 지반조사	2. 철근콘크리트	1. 준비공사	C. 토목공사 기술시방	C. 토목공사 기술시방
	3. 지반개량공사	제3장 지반개량공사	3. 건축	2. 토공 및 기초공사	M. 기계공사 기술시방	M. 기계공사 기술시방
	4. 토공사	제4장 토공사	4. 토목	3. 구조체공사	E. 전기공사 기술시방	E. 전기공사 기술시방
	5. 말뚝공사	제5장 비탈면 보호공사	5. 기계설비	4. 토목시설물 고유공종	T. 전자통신공사	T. 전자통신공사
	6. 콘크리트공사	제6장 배수공사	6. 전기설비	5. 방수, 단열, 지붕, 커튼월	기술시방	기술시방
	7. 배수공사	제7장 교량공사	7. 통신설비	6. 마감공사		
	8. 강구조물공사	제8장 터널공사	8. 조경	7. 전기설비공사		
	9. 교량공사	제9장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기층공사		8. 기계설비공사		
	10. 포장 및 교통안전시설공사	제10장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9. 조경공사		
	11. 터널공사	제11장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12. 기타공사	제12장 교통안전시설공사				
	13. 재료	제13장 기타공사 제14장 재료				

2.2.2 설계기준

설계기준 및 하위기술기준들은 건설공사에 적용되는 건설공사기준 중 표준시방서를 포함한 시공기준을 제외하고 설계기준을 포함하여 건설공사에 적용되는 지침, 편람, 표준도, 기술지도서, 요령 등을 말한다. 국내 설계기준 및 하위기술기준의 제·개정 현황을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표 4 국내 설계기준 및 하위기술기준 현황

1999. 8 기준

관리주체	현황	관리주체	현황
1. 대한토목학회	· 건설공사품질 및 규격관리 실무편람 <'94> · 시설물 유지관리지침<'97>	8. 한국수자원학회	· 하천시설기준<'92> → 하천설계기준<'99 제정중> · 댐시설기준<'93> · 댐시설 유지관리기준<'94> · 소규모시설 설계지침<'90> · 하천제방표준단면도 <'83> · 배수문본체표준도(부문비도)<'63> · 하천구조물 표준도<'94>
2. 한국콘크리트학회	· 철근콘크리트설계편람<'97> ·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99>		9. 한국조명전기설비학회
3. 대한건축학회	· 철근콘크리트 구조계산기준(허용응력) · 철근콘크리트 구조계산기준(극한강도) <'97> · 철근콘크리트하중기준<'97> · 프리캐스트콘크리트 조립식 건축구조설계기준<'98> · 강구조물 용접부의 비파괴 검사기준 ('98 제정중) · 목구조설계기준<'98 개정중>	10. 공기조화냉동공학회	-
	4. 한국지반공학회	· 구조물 기초설계기준<'97> · 용벽구조표준도<'97> · 가로지하매설물표준도<'70>	11. 한국강구조학회
5. 한국조경학회	· 조경설계기준<'99 제정중>	12. 한국수도협회	· 상수도시설기준<'97> · 중수도시설기준 및 유지관리지침 <'94> · 중수도 실무지침<'94> · 상수도표준도<'66>
6. 한국도로교통협회	· 도로포장설계· 시공지침<'97> · 도로시설기준 (교통량조사편<'79>) (조정편<'79>) (유지관리편<'97>) · 도로교 설계기준('99 제정중) · 도로교하부구조설계지침<'97> · 도로편람<'73> · 도로교상부구조표준도<'79> · 도로교하부구조표준도<'79> · 도로암거구조표준도<'97> · 조립식교각표준도<'75>	13. 한국지진공학회	· 내진설계기준<'97> · 내진설계기술기준(지진응답계측기 설치·운영)<'99 제정중>
		14. 환경부	· 하수도시설기준<'92> · 하수도공사 시공관리지침<'93> · 하수도시설관리지침<'84> · 하수도 표준도<'90>
		15. 한국항만협회	· 항만시설물설계기준<'93>
		16. 한국어항협회	· 어항구조물설계기준<'95>
		17. 농어촌진흥공사	·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계획설계기준, 농로편<'94> · 농지개량사업 계획설계기준, 해면간척편<'91> · 농지개량사업 계획설계기준, 댐편 <'82>
			7. 대한터널협회

2.2.3 하위기술기준

현재 국가가 관리하는 기준이외에 관리주체들이 관리하고 있는 각종 하위기술기준이 만들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하위기술기준은 건설공사기준 체계에 따라서, 지침·편람·요령 등의 형태로 새롭게 규정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정부는 하위기술기준 작성 요령을 각 학·협회에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하위기술기준은 현재 총괄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전체적으로 체계화되는 데는 아직도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3. 한국의 건설 제 기준 정비방안

3.1 중·단기 건설공사기준 정비의 지속적 추진

'95년 7월 건설기술기준 50종(표준시방서 12종, 기술기준 42종)을 대한토목학회 등 관련 민간단체에 이관하고 중·단기적으로 시방서에 대한 전면적 정비를 추진한 이후, 건설공사기준의 체계 정비에 목표를 설정하고, 단기 추진계획에 의거하여 현행 13종 표준시방서의 기본틀을 유지한 상태에서 정비를 수행하고, 우선적으로 공사시방서, 전문시방서 체계를 구축하는 등 새로운 건설공사기준 체계 정착을 추진하고 있다. '99년 1월부터 새롭게 시작되고 있는 건설공사기준 중기 추진계획은 크게 건설공사기준의 체계 및 내용의 지속적 정비, 건설공사기준의 사용성 강화, 건설공사기준 관리의 체계화에 중점목표를 두고 진행되고 있다.(표 4 ~ 표 5 참조)

표 5 시방서 체계정비 마스터 플랜

분야	단계 항목	기 수행내용		중기('99.1~2000.12) (건설공사기준 체계 정착)	역할 분담
		(~'97.10)	('97.10~'98.12) (건설공사기준 체계 정비)		
시방서 체계 정비	표준 시방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방서체계 위계 설정 · 표준시방서 정비 계획 및 작성요령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리주체별로 표준시방서 정비지침에 의한 표준시방서 정비 · 표준시방서 영문번역 배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리주체별 표준시방서 정비 계속 · 표준시방서의 지속적 관리를 위한 예산 확보 및 지원계획 수립 · 관리주체별 자체적인 시방서 관리 체계 구축 · 표준시방서 관리주체 정비계획 검토 및 지속적 예산지원방안 마련 	정부 관리주체 건기원
	전문 시방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시방서 개념 정립 및 작성요령 마련 · 공사시방서 작성요령 마련 · 표준시방서 체계, 질 구성 및 내용 기술방법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시방서 모니터링 및 보완 · 발주기관별 전문시방서 제정 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시방서 체계의 지속적인 관리 및 관리체계 구축 · 전문시방서 전산시스템 구축 · 전문시방서 체계의 정착을 위한 발주기관별 전문가 지속적 확보 · 공공발주기관 전문시방서 표준(안) 마련 	정부 발주기관 건기원
	공사 시방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시방서 관련 발주청 교육 실시 · 공사시방서 작성지침에 의한 공사시방서 작성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시방서 작성지침 발주청 배부 · 공사시방서 작성의 무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시방서 정착 유도 	발주기관
제도 개선/ 기타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준운영관리학·협회 이관 · 관리주체 및 시방서 위계의 정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시방서 작성지침 발주청 배부 · 공사시방서 작성의 무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공사기준 관리의 체계적 운영 · 건설공사기준 전산화 추진(용역회사, 발주청) · 시방서 관리 및 연구전담조직 설치 	정부	

표 6 건설공사 설계기준 및 하위기술기준 체계정비 마스터 플랜

단계 분야	기수행내용		중기(99.1~2000.12) (건설공사기준 체계 정착)	역할 분담
	(~ 97.10)	(97.10~98.12) (건설공사기준 체계 정비)		
건설공사 설계기준 및 하위기술 기준 체계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공사기준 체계 및 내용 정비방안 마련 -지방서의 건설공사기준을 설계기준과 하위기술기준으로 위계설정 -불요불급기준 통·폐합 -건설공사 설계기준 및 하위기술기준 구성방식 통일 • 건설공사 설계기준 정비방안 수립 • 건설공사 설계기준 및 하위기술기준 관련주체 정비 계획 및 지속적 예산지원 방안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공사 설계기준 및 하위기술기준의 내용 및 체계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공사기준의 지속적 제·개정 및 보완 • 건설공사기준 전산화 추진 • 건설공사기준 관리체계의 구축 및 체계적 운영 	정부 관리주체 건기원
제도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기준 정착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 도출 및 제도정비 • 건설기준관리 전담기구 설치 	정부

3.2 건설공사기준의 선진화 추진

건설공사기준의 선진화는 단순히 외국의 기준을 도입하여 국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건설공사기준의 선진화는 기준의 국제화를 통한 세계 건설시장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기준의 사용성을 강화해나갈 수 있도록 사용자 위주의 기준으로 되는 것이다. 또한, 건설공사기준의 선진화는 정보기술과 결합하여 국가 건설정보망을 구축하는데 기반이 되어야 한다.

건설공사기준의 선진화를 위한 기본방향은 건설공사기준의 사용성 강화를 위한 내용의 지속적 정비, 건설공사기준의 선진화 및 일관성 확보를 위한 기준 연구·관리체계의 구축, 건설공사기준의 전산화를 통한 국가건설정보망 구축기반 마련으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기본방향은 중기계획 뿐만 아니라, 장기계획에서도 지속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세부 추진전략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신기술의 반영 및 사용성 확보를 위한 건설공사기준의 지속적 정비

- 건설공사기준간 관리주체별 의견수렴을 위한 건설공사기준정비위원회 구성
- 성능 중심의 건설공사 기준체계 연구 및 시행
- 건설공사 신기술의 기준반영을 위한 제도 마련

둘째, 건설공사기준의 선진화 및 일관성 확보를 위한 기준 연구·관리체계의 구축

- 건설공사기준의 국제적 위상 확보를 위한 건설기준관련 연구 및 국제적 교류 강화
- 기준연구 및 관리전담 민간기구의 설립을 통한 지속성 확보
- 건설공사기준관리 전담조직을 통한 기준의 관리 및 홍보

셋째, 건설공사기준의 전산화를 통한 국가건설정보망 구축기반 마련

- 건설공사기준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한 국가건설정보망과의 연계
- 정보기술을 이용한 건설공사기준 활성화방안 마련

이러한 추진전략에 따라 향후 건설공사기준의 정비는 사용자 편의를 위한 건설공사기준 개정, 수량산출기준과의 연계를 통한 건설공사기준의 활용성 강화, 건설공사기준 발전의 지속성 유지의 흐름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3.3 건설업계의 대응방안

새로운 건설공사기준 체계의 수립 및 운영에 따라 현행 건설업계에서는 기존의 시방서를 포함한 다양한 기준의 적용시 많은 새로운 경험들을 하게 될 것이다. 물론 지금까지 나타난 바에 의하면, 아직도 많은 업체들이 관행적인 시방서 작성 및 건설공사기준 적용방식을 사용하고 있으며, 단지 형식적 측면에서 변화된 형태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아직도 많은 업체들은 기존의 시방서를 답습하거나, 현장의 조건과는 상관없는 용역에 결과물로서만 의미를 부여하는 시방서를 작성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각종 기준들을 나열하면서 각각의 기준들에 대한 검토는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건설관련 업체들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들과 함께 철저한 대비를 하여야 한다.

이에 따른 건설관련 업계의 대응방안을 살펴보면,

먼저 용역업체에서는 해당 시설물의 설계도면을 포함한 설계성과물을 작성하기 위하여 다양하게 제시되어 있는 각종 기준들을 폭넓게 검토하여야 한다. 물론, 대상 시설물에 관한 설계기준을 통하여 최저기준의 확립이 필수이며, 단순한 기준의 나열이 아니라, 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기준 선택의 객관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러한 행위들은 설계과정의 부실원인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다. 또한, 지방서 작성의 기계적인 접근을 지양하여야 한다. 기존의 지방서 작성이 과거의 지방서의 재판이거나, 지방서의 베끼기 수준이라면, 이는 새로운 건설공사기준의 체계 제시 의미를 감소시키는 원인이 될 것이다. 또한, 용역업체들은 새로운 공법 및 기법의 적용에 활발하게 참여함으로써 건설공사기준의 발전에 참여하여야 한다.

시공업체에서는 현재의 지방서 체계의 변화를 현장 실무자들이 숙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지방서 체계의 변화가 기존의 지방서가 가지는 계약적 의미의 강화라는 측면을 집중적으로 교육시켜야 한다. 지금까지 계약적 의미는 시설물의 완공이라는 측면에서 발주기관과의 관행적인 협의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따라서, 향후 건설공사는 발주기관과의 설계도면과 공사지방서를 통한 해석의 과정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또한, 현행 지방서가 가지는 모호한 측면에 대한 지속적인 명확화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이러한 행위들은 실천적으로 검증의 과정을 통하여 모니터링 되어야 하며, 철저히 기록되어야 한다.

자재업체에서는 자재의 형식적인 기준에 의하여 지방서에 기재되는 형태로 반영되고 있지만, 향후 자재의 성능 측면이 보다 강화될 것이라는 데 주목하여야 한다. 따라서 자재업체에서는 개별적으로 자재의 형식적인 기준의 강화 뿐 만 아니라, 자재의 성능에 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하여 자체적인 자재 지방서를 작성할 수 있어야 한다. 물론 이러한 측면이 자재업자의 책임 강화라는 측면도 있지만, 앞으로 건설공사에서 공급되는 자재들이 국내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차원에서 공급되어지는 등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므로 이러한 노력이 강화되지 않는 한, 경쟁력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4. 결론

'97년 7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여 건설공사기준의 위계가 정립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된 건설공사기준 정비업무의 핵심적인 목표는 건설공사기준의 선진화, 건설공사기준의 계약적 측면의 강화, 클레임 방지이다.

이러한 목표에 따른 건설공사기준 정비현황을 살펴보면, 13개의 표준시방서 중 7개의 시방서가 '98년에 이어 현재까지 개정작업을 수행하고 있고, 설계기준 및 하위기술기준의 경우도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을 포함한 다양한 기준들이 개정되거나, 제정되고 있다.

또한, 한국도로공사를 포함한 건설교통부 산하 4개 공사와 서울지방 국토관리청이 공사(전문)시방서를 작성하여 업무에 활용하고 있으며, 현장에서의 공사시방서의 활용과 이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공사시방서 작성 요령'의 배포 및 이에 대한 교육을 수행하였다.

또한, '99년 1월부터 새롭게 시작되고 있는 건설공사기준의 중기추진계획은 크게 건설공사기준의 체계 및 내용의 지속적 정비, 건설공사기준의 사용성 강화, 건설공사기준 관리의 체계화에 중점 목표를 두고 있으며, 현재 이를 실현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로 '건설공사기준 전산시스템 개발 연구'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을 중심으로 수행되고 있다.

이처럼 정부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건설공사기준의 정비 및 선진화에 지속적인 지원을 통한 내실 있는 업무 추진을 유도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건설공사기준 전문관리기구를 설립하여 지속적인 건설공사기준 관리 및 기초연구를 수행하도록 추진할 것이다.

따라서, 건설공사기준 관련주체들은 이제까지 선진 외국기준의 도입에 주안점을 두었던 기준개정 및 관리업무에서 벗어나, 향후 ISO를 비롯한 국제 표준 및 기준관련 업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국내기준의 국제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야 할 것이며, 장기적인 마스터 플랜과 기초연구 활성화에 적극 참여가 필수적이다.

참고문헌

1.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설공사기준 운영체계 구축방안 연구, 1997. 10
2. 구재동의 1인, 건설공사 설계기준 운영 및 관리방안,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설기술정보, 1998. 4
3.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설사업관리제도 활성화 연구(I), 1998.12